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4 선고 2018가단504570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 변호사 성승용

피고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 변호사 임통일, 박창신

변론 종결2018. 12. 17.

판결 선고2019. 1. 1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6,478,807원 및 그중 55,896,249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4. 1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D과 피고 B 사이의 2017. 8.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56,478,80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28,239,4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 1)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09. 5. 7. 보증기간을 2010. 5. 6., 보증한도를 7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보증금액이 55,800,000원, 보증기간이 2017. 10. 27.로 변경되었다.
- 2)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 3) 피고 B은 2017. 3. 31. 사업자등록을 폐쇄하였고, 2017. 10. 28.경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1. E은행에 55,896,24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B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위약금 197,390원과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 385,168원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나.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는데, 피고 C, D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6.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8. 3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의 재산 상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5. 11. 25. 채권최고액 884,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7. 9. 6.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56,478,807원(= 대위변제금 55,896,249원 + 위약금 197,390원 + 보전비용 385,168원) 및 그중 55,896,24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4. 15.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 D에게 매도한 행위로서 원고 등 피고 B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 피고 C, D의 주장

피고 C,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매매가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것은 원고가 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2017. 12. 21.이고 이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이지만, 이미 그 전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 당시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와 같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피고 C, D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은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C, D의 선의 여부 을나 1~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① 피고 C는 2016. 10.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연접한 화성시 H, I 토지와 위 토지상의 창고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1. 2.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식회사 J에 임대하였다.

② 주식회사 J 대표 K이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다고 알려 주었고 피고 C와 조카인 피고 D이 공동으로 매매대금을 9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2017. 3. 22. 피고 D의 부친인 L과 K의 입회하에 피고 B과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계약에서 잔금의 지급 시기를 6개월 정도 후로 정하였고, 잔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들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2017. 3. 22.~2017. 8. 16. 피고 C, D과 위 피고들의 친인척들이 합계 21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 C는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위 대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2017. 8. 24.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905,802,000원으로 평가되었다.

④ 피고 C는 2017. 9. 6. E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자신의 돈을 보태어

667,180,852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E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시에 마쳐졌다. 위와 같은 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직원이 실거래가 신고 기간의 도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날짜를 2017. 8. 30.로 기재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마쳤다.

⑤ 피고 C는 2017. 10. 20. 피고 B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⑥ 위 ③~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D와 그 친인척들이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합계가 883,175,100원에 이르고 위 피고들이 현금으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2017. 8. 30.자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시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2017. 3.말경에 체결되었고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위 등기원인은 과태료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지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들이 서로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⑧ 피고들 사이에 매매대금이 최초로 수수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5개월 이상이 경과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전혀 없었는바, 매수인인 피고 C, D이 피고 B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은 없었다.

⑨ E은행은 원고에게 2017. 11. 8. 피고 B의 보증사고를 통지하였는데 사고내용을 '발생일자: 2017. 10. 28., 종류: 원금연체'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발생일자까지 피고 B이 대출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심병직

별지